

충청북도 경관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9년 3월 10일
- 회부일자 : 2009년 3월 10일

3. 제안이유

- 경관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, 훼손된 경관은 복원함과 동시에 새로운 경관을 개성있게 창출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4. 주요골자

- 경관계획의 내용 (안 제2조)
- 경관사업 대상·사업계획서(안 제3조, 안 제4조)
- 경관위원회 운영(안 제5조)
 - 경관위원회 운영은 충청북도건축위원회에서 기능 대행
-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(안 제6조)
- 공동위원회 운영(안 제7조)

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 경관조례안을 검토한바
- 경관법 및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
-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우수한 경관의 보전 및 훼손된 경관의 복원,

새로운 경관의 개성있는 창출을 통하여 충청북도 전역을 아름답고 효율적인 경관을 창출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
- 참고적으로 강원, 전남, 경남, 대구, 인천, 광주, 대전, 울산 등 8개 시도 제정운영